

장애 상실수익액

작성자 : 손해사정사 박한석¹⁾

소 속 : 손해사정법인 가나

1 장애 상실수익액이란?

부상에 대해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을 장애라 한다. 즉, 치료를 다 한 후 남은 불편한 증상이 장애가 된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애는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 증상 중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치유되지 않는 고정된 증상이 사고 전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주는 정도를 노동력상실율로 평가하여, 그 노동력상실율만큼 소득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에게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남는 경우, 노동력 상실로 인해 장차 소득을 얻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를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장애 상실수익액은 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1) 경력 28년의 손해사정사로 삼성화재(주)를 거쳐 (사)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지식경제부 경전피해보상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소비자원 전문상담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인천검찰청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스펀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했고 “자동차사고 이렇게 하라”, “보험가입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외 다수의 저서가 있다.

장애 상실수익액 산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액 × 노동력상실율 × 노동력상실기간(월수)의 호프만계수(또는 라이프니쯔계수)

소득액은 사고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차 얻었을 소득이며, 이는 사고 전의 소득, 학력?기술?경험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노동력상실율의 평가에 있어 우리 나라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며, 국가배상법이나 A.M.A.(미국의학협회)방식이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잘 쓰는 팔과 잘 쓰지 않는 팔 등에 따라 노동력상실율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직업별 나이별 노동력상실율 평가에 유용한 면이 있으나(다만 현재 우리 나라 손해보상에서는 직업적 요소만 고려하고 있다), 그 평가기준이 1960년대 작성된 관계로 그 이후 새로이 생겨난 다양한 직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또한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여하튼 치료를 다 한 후에도 이상이 있는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장애(노동력상실) 여부를 평가하여, 노동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 상실율만큼 소득액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장애에 의한 상실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노동력상실기간은 노동력상실이 계속되는 기간은 말하며, 노동력 상실이 일정기간에 그치는 경우를 한시장애, 노동력 상실이 변화가 없는 경우를 영구장애라 하며, 영구장애의 노동력상실기간은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 즉 정년까지로 본다.

상실수익은 장차의 기간동안 얻을 소득을 사고 시점으로 미리 앞당겨 일시금으로 보상받게 되므로 장차 발생할 소득(상실수익)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력상실기간(월수)에 대해 미리 이자를 계산해둔 호프만계수 또는 라이프니쯔계수를 사용한다.

장애 상실수익 계산에 있어 물가상승은 반영되지 아니하며(이율 및 공제 방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 학계에서는 물가상승 부분 상실수익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외국의 경우에도 십수년간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영국 및 미국 여러 주는 이자율공제방식을 달리하거나 이자율 자체를 우리 나라보다 낮게 하기도 한다)

2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차 얻었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즉 장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 노동력상실율만큼 소득액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월소득액이 200만원인 사람이 10%의 노동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이라면 소득액 200만원에 대한 10%인 매월20만원을 매월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30세이고 향후 30년(60세까지 360월)간 더 일할 수 있다면 장차 계속적으로 상실하는 수익은 매월 20만원씩 360월을 곱한 7,200만원이 되며, 다만 향후 계속적으로 얻을 수익을 사고시점에 일시금으로 보상받으므로 360개월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360개월의 호프만계수(자료실에 있음)는 219.6100이므로 20만원씩 매월 계속하여 360월간 받을 7,200만원은 현재의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43,922,000원이 된다.

이 같이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데, 이러한 장애 보상 방식을 노동력상실설이라 하고, 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와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치료 후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종전 직장에 복귀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상실이 없음에도 장애 보상을 받는 셈이 되고, 반대로 사고 전 용접공이었던 피해자가 손을 다침으로써 장애가 남아 사고 전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훨씬 적은 단순 노무에 종사할 수 밖에 없어 소득액이 상당부분 감소한 경우에는 실제의 상실수익은 많음에도 적은 보상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금액만큼 보상을 하는 차액설(사고전 소득액에서 사고 후의 소득액을 차액이 장애 상실수익이라는 설)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차액의 입증에 곤란하다는 점, 실제 발생하는 차액은 장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여건이나 본인의 의지에 의한 영향이 많다는 점, 노동력상실

이 있음에도 사고 전의 소득을 얻는 것은 본인이 노력을 더욱 배가한 것이거나 회사 등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노동력상실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다수설이며, 판례 또한 같다.

3 소득액은 장차 수입 가능한 금액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보상함에 있어 상실수익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은 해당 피해자가 장차 얻을 소득액이다.

피해자가 장차 얻을 소득액은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학력, 경력, 기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사고 당시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직자였으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중이었던 경우 장차 취업 가능한 직종(사무직 또는 기술직 등)의 대졸 초임 임금을 장애 상실수익액 산정의 소득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용접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용접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에는 용접공 통계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았더라도 장차 용접공의 통계임금을 얻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공무원이나 상장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근무한 기간만큼 호봉이 확정적으로 승급 가능하고, 호봉 승급만큼 급여가 인상된다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장차 얻을 소득액에 반영한다. 다만 급여소득자에 있어 직급 승진 가능성에 의한 급여 인상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호봉은 근무 년수에 따라 그 승급이 확정적이지만(100% 승급 가능하지만), 직급은 그 승진이 확정적이지 아니라는 이유(100% 승진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4 실제 수입 감소 없어도 장애 상실수익 보상 가능해

공무원이나 상장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사고로 장애가 남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개 계속해서 근무 가능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급여 등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사고로 장애가 남게 되더라도 장애로 인한 수입 감소액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같이 장애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감소 여부 및 금액에 관계없이 장애 상실수익액을 보상한다. 즉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남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장차 얻을 소득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애 상실수익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 보상이 노동력상실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남더라도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사고 전에 비해 노력을 배가하였거나 고용자의 호의 또는 배려에 힘입은 경우가 보통이므로 실제로는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소득감소가 있는 것으로 하여 장애 상실수익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력상실이 경미하거나 노동력상실로 인해 사고 전 일을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애 상실수익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5 **한시적 장애와 영구 장애의 상실수익**

장애보상은 더 이상 치료되지 않고 남는 장애 중 특정 일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를 노동력상실율로 평가하여 장애 상실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일정기간만 남게되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호전되는 경우를 한시적 장애라 한다. 반면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호전되지 않고 평생 계속되는 경우를 영구 장애라 한다.

장애가 한시적인 경우 소득의 상실 또한 그 한시적 기간에 대해서만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받게 되며,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까지 상실수익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

예컨대 월소득액이 100만원이고, 향후 3년간 10%의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가 남았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씩 3년(36월)간 소득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상실수익액은 360만원이 된다(물론 상실수익 기간에 대한 이자는 공제해야 한다).

요즘은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다. 소위 디스크라 말해지는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증의 장애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한시적 장애로 판단하고 있고,(사실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그렇게 유도해간 면이 많다) 디스크의 수핵 제거수술을 하는 경우 역시 한시적 장애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다.

한시적 장애는 관절의 운동제한에 의한 강직장애(관절의 운동이 제한되면 보행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골절 치료를 위해 관절을 고정한 탓에 관절의 운동에 지장이 있게 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거나 차차 호전되는 장애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영구적 장애인지 또는 한시적 장애인지 여부는 의사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한시적 장애를 판단하는 이유로 기왕증을 고려한 경우도 있다는 점(기왕증은 장애에 대한 기여도로써 판단해야 하며, 장애기간에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등으로 인해 실제 장애의 평가나 보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6 **상실수익의 향후 소득기간 이자 공제**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사고 이후 매월 계속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사고가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일시금으로 받게 되므로, 향후 매월 계속하여 손해가 발생할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즉 1개월 후 발생할 상실수익에 대해서는 1개월분의 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2개월 후 발생할 상실수익에 대해서는 2개월분의 이자를 공제하는 식이다.

이자의 공제 방식에는 단리 공제방식과 복리 공제 방식이 있는데, 단리공제 방식을 호프만식이라 하고, 복리공제 방식을 라이프니쯔식이라 하며, 소송시 판례는 호프만식을 사용하고, 보험회사는 가급적 라이프니쯔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장애 상실수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차의 기간(월수)에 대해 미리 이자공제 액을 계산해둔 수치를 사용하며, 이를 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쯔계수라 한다.

이자 공제에 있어 현재 적용하는 이율은 년 5%이며, 이에 의해 미리 계산해둔 호프만 계수 및 라이프니쯔 계수는 12월의 경우 각각 11.6858과 11.6812이며, 24월의 경우 22.8290과 22.7938이다.

월수별 호프만계수 및 라이프니쯔계수는 이곳 사이트 보상참고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7 미성년자의 소득활동 가능시기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활동 가능시기를 20세가 된 날로 본다. 즉 20세 미만인 자가 사고로 장애를 남긴 경우 장애 상실수익액은 20세가 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해야 하므로 군 복무에 필요한 기간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미성년자로서 군 복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군 사병으로 복무할 기간(현재 22월)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며, 피해자가 해군 또는 공군이나 공익요원으로 복무가 확정되었거나 현재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더 복무해야 할 기간을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피해자가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또는 여타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경우, 그리하여 학교나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얻을 소득을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경우 그 교육 기간은 상실소득액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8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소득활동을 종료하는 시기, 즉 정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에 도달하는 날로 본다. 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로서 법규나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

우에는 법 및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는 급여소득을, 이후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일용근로자 소득 또는 해당 기술직종이나 경험 등을 활용한 통계소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반대로 법이나 회사 규정에 의한 정년이 60세 이상인 경우(예컨대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에는 그 정년까지 급여소득을 얻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 사회현상에 의해 정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예컨대 육체적 노동에 의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경험을 살려 대체로 가벼운 정신적 노무만을 제공하는 건축사, 중기대여업자, 부동산중개사, 의사 등의 정년은 65세까지로 보며, 한의사, 목사, 변호사, 법무사, 승려 등에 있어서는 65세 또는 70세를 정년으로 보기도 한다.

반면 특정한 직업에 있어서는 해당부분 종사기간을 60세 이하로 보기도 한다. 예컨대 스포츠 선수라거나 연예인 등의 일부 직종이 그러하다.

특정 직종의 정년이 60세 이하인 경우 그 정년으로부터 60세에 달할 때까지는 일반 육체노동자로서의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9 고령자의 소득활동 종료시기

사고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60세에 가까운 경우 피해자 일하던 분야 종사자의 평균 연령,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후 기간까지 소득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60세 이상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더 일 수 있을 것으로 보거나 60세에 가까운 농업종사자 등의 경우 정년을 65세 정도로 보기도 하며, 여타 직종에 있어서는 사고일로부터 2~3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을 사고 이후 소득활동 가능기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 56세 이상 59세 미만 : 4년
- 59세 이상 67세 미만 : 3년

67세 이상 76세 미만 : 2년
76세 이상 : 1년

10 **보험회사가 장애 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나이가 많은 부상자 또는 미성년자, 과실이 많은 피해자 등에 있어서는 장애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자가치료(집에서 요양하는 것)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소요될 치료비로써 보상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애의 유무와 정도(노동력상실율의 정도)를 예상하여 다 치료한 경우의 보상액과 향후치료비로서 보상받을 금액을 상호 비교해봐야 한다.

이는 좀 복잡하고 판단이 쉽지 않는 문제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향후치료비로 보상받는 경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11 **장애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자는데...**

장애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뇌 또는 머리 등의 부상으로 1~2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거나, 유아 또는 아동의 장애 여부 판단에 있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성장판 손상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 때 장애 여부에 따른 보상은 나중 별도로 하기로 하고, 장애보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먼저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다.

즉 일단 보상합의를 하되, 나중 장애가 남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상하기로 하는 일부 보상을 유예한 조건부 합의인 셈이다.

이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확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하고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할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